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찰청·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 마련〉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63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9. 29.
3. 회부연월일 : 2025.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통칭 ‘인터폴’)와 같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근거나, 외국 또는 인터폴과의 상호 인력 파견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共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제협력 활동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

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활동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원활한 국제협력활동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외국 정부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국제협력 사무 기구에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국제협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u>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u>	제8조의3(국제협력) ① ----- ----- ----- 국제협력 활동 등(이하 이 조에서 “국제협력활동등”이라 한다)--- -----.
<u><신설></u>	②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활동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협력 사무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u><신설></u>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 사무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 등에

현행	개정안
<u><신 설></u>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원활한 국제협력활동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국제협력 사무기구에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사전에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제협력활동등의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 등과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개정안 제8조의3제2항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활동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는 경찰의 임무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을

정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은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9조제2항²⁾은 국제협력관이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국제범죄 수사 및 국제공조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기능이 축소되어 국제업무 수요에 대비하는 기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국제공조 업무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사무 기구에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17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국·부 또는 과로 한다.

② 경찰청장·차장·국가수사본부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2.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3.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다만,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³⁾에 해당하고, 「정부조직법」 제2조 제4항⁴⁾은 중앙행기관의 보조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9조에서 국제협력관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사무기구 근거를 마련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들은 대부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임.⁵⁾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제2조는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대통령령(각 부처 직제)으로 정하도록

3)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 9. (생략)

③ ~ ⑩ (생략)

제37조(행정안전부) ① ~ ④ (생략)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②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 ⑩ (생략)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사무기구) ① 시·도자치경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경찰공제회법」 제9조(조직)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⑧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기구)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직접 보조기관 설치를 규정함은 정부조직법령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직 관리의 통일성·일관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개정안의 사무기구의 국제협력 등은 경찰청 ‘국제협력관’ 및 해경청 ‘국제협력담당관’에서 기(既) 수행 중이므로, 별도 사무기구를 두는 것은 기능 중복·비효율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개정안 제8조의2제3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제협력 사무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6)은 국가기관의 장이 국가적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제8조의2제3항을 통해서 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협력 사무기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파견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제8조의2제4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원활한 국제협력활동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국제협력 사무기구에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사전에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제8조의2제4항 중 경찰관을 재외공관 및 외국 정부기관에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41조 제1항제6호7)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개정안 제8조의2제4항을 신설함으로써 경찰관을 파견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제1호8)는 공무원을 외국 기관에 파견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8조의2제4항 후단의 협의 대상에 외교부장관 외에 인사혁신처장을 추가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생략)

8)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9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2. ~ 3. (생략)

개정안 제8조의2제4항 중 외국 정부기관 소속 임직원을 파견받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MOU를 체결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파견이 가능할 것이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이 외국의 국가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호 파견을 하여 근무하는 사례가 있음.⁹⁾

개정안 제8조의2제4항 중 외국 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치안 분야는 보안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일반법에 앞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외국 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신중한 접근도 필요해 보임.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항¹⁰⁾은 국가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9) 구체적인 사례로는 2011년 4월 27일 미국과 외무공무원 상호 인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우리나라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각각 직원 1명을 연락관 자격으로 상대측에 최장 1년간 임시파견하는 사례가 있음.

(출처: 연합뉴스 2011년 4월 27일 기사, “한·미, 외무공무원 인사교류 MOU체결”)

10)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생략)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생략)

경찰청은 최근 마약·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하여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폴뿐 아니라 아세나아폴·UN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3에 따른 국제공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하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